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94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이양수 · 김선교 · 김은혜
이인선 · 김상훈 · 조경태
이철규 · 김재섭 · 정동만
박성민 · 안상훈 · 엄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 중개자가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PB상품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자신의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청약의 접수·대금의 수령 등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직접 일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해당 상품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중개 상품인지 아니면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누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모르는 가

운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화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개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를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내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재화등과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지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청약의 접수, 대금 수령 등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의 또는 과

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4항제5호의3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및 제5호의5를 각각 제5호의5 및 제5호의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재화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의2. (생략)

5의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닌 사실은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자

<신설>

5의4. · 5의5. (생략)

6. ~ 8. (생략)

⑤ ~ ⑧ (생략)

-----.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제20조제1항 본문-----

5의4.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재화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자

5의5. · 5의6. (현행 제5호의4 및 제5호의5와 같음)

6. ~ 8.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